

광주지방법원 2024. 12. 17 선고 2024가단50433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 2024. 9. 10.

판결 선고 2024. 12. 17.

주 문

-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. 9. 7.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12,314,77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- 피고는 원고에게 12,314,7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(일부) 각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최윤중

별지